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기준」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